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32

발의연월일: 2024. 7. 9.

발 의 자:서삼석·박희승·임호선

윤준병 · 송옥주 · 복기왕

이병진 • 박수현 • 위성곤

박지원 • 문대림 • 김영진

김문수 · 안도걸 · 조계원

이워택 • 신영대 • 이개호

의원(18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금의 품질향상과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수산 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집단급식시설에 대 하여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 록 하고, 소금사업자의 경영·기술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실시 기관을 지정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수산부장관의 우선구매 요청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의 우선구매 실적이 전무하고 컨설팅 서비스의 경우도 지난 10년 동안 단 한 차례만 실시된 것으로 확인되어,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위 한 규정들이 사실상 사문화된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태풍 등으로 양질의 소금을 생산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소금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승하여 이로 인한 천일염 제조업자의 경영 악화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문화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매년 3월 28일을 소금의 날로 지정함과 동시에 천일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함으로써, 소금산업의 진흥 및 활성화를 촉진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소금을 제공하고 아울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집단급식시설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표준규격품 또는 우수천일염인증품을 우선구매한 경우 전년도 구매실적을 해양수산 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제출받은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제3항 및 제5항 신설).
- 나. 국민에게 품질 좋은 소금 등을 널리 알리고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3월 28일을 소금의 날로 정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 다. 소금사업자의 경영·기술 등 개선을 위한 컨설팅 실시 대상에 소금 제조 기술의 개발을 위한 조사,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컨설팅 실시 기관 지정 현황 및 컨설팅 실시 기관의 활동 실적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제20

조제3항 신설).

라. 국가로 하여금 천일염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소금제조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천일염 최저가격 보장제 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집단급식시설이 제1항에 따라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을 구매한 경우 전년도 구매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실적의 제출 및 공표의 시기·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2(소금의 날) 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널리 알리고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3월 28일을 소금의 날로 정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소금 제조 기술의 개발을 위한 조사, 분석 등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실시 기관 지정 현황 및 컨설팅 실시 기관의 활동 실적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2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0조의2(천일염 최저가격 보장제) ① 국가는 천일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금제조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천일염 최저가격 보장제"라하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천일염 최저가격 보장제의 기준이 되는 생산비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 ·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생산비 결정 기준·절차 및 국회 제출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우선구매 등) ① (생 략)	제18조(우선구매 등)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집단급식시설이 제1항에 따
	라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
	품을 구매한 경우 전년도 구매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u><신 설></u>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전년도 구매실
	적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생략)	<u>④</u> (현행 제2항과 같음)
<u> <신 설></u>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
	매실적의 제출 및 공표의 시기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제18조의2(소금의 날) ① 국민에
	게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
	공품을 널리 알리고 소금산업
	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3월
	28일을 소금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
	금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

제20조(컨설팅 지원) ① 해양수산 저부장관은 소금사업자의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실시 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생 략) <신 설>

2. ~ 4. (생 략)

 ② (생 략)

 <신 설>

③ (생 략) <신 설>

- 2. 소금 제조 기술의 개발을 위한 조사, 분석 등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 3. ~ <u>5.</u> (현행 제2호부터 제4 호까지와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실시 기관 지정 현황 및 컨설팅 실시 기관의 활동 실적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제20조의2(천일염 최저가격 보장 제) ① 국가는 천일염의 가격 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을 소금제조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천일염

최저가격 보장제"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천일염 최저가격 보장제의 기준이 되는 생산비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후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생산비 결정 기준·절차 및 국회 제출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